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회 선거관리감독위원회 설치〉

■ 김정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869호)

2026. 8.

국 회 운 영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경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주요내용	3
2. 개정안의 입법취지	6
3. 검토의견	8
가. 선거관리감독위원회 설치 (안 제37조제1항 등)	8
나. 선거관리감독위원회에 대한 특례 (안 제37조의2 신설) ...	10
다. 관계기관의 의견	14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정재 · 박덕흠 · 이달희 · 최은석 · 박충권 · 최수진 ·

강명구 · 김대식 · 서천호 · 서명옥 의원(10인)

2. 제 안 일 : 2026. 7. 9.

3. 회 부 일 : 2026. 7. 10.

※ 의안번호 : 1986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가 핵심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소쿠리 투표 사태,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논란,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투표 지연 논란이 발생하는 등 선거관리 및 조직 운영에 있어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겸임 상임위원회로 국회 선거관리감독위원회를 신설하여 행정 안전위원회가 소관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을 비롯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요 사업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투표용지·투표함 등 선거관리 물품의 작성·보관·송부·

회수 체계에 관한 사항, 「공직선거법」 제151조의4제1항의 선거관리 중대사고 및 재발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감사원의 선거관리 사후감사 결과보고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도록 하여 국회의 선거관리 관련 심사 기능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진행 중인 개별 선거의 투표·개표 사무, 개별 투표소 또는 개표소의 운영, 개별 선거의 당선인 결정 또는 선거 결과 확정, 계속 중인 선거소청·선거소송·당선소송의 심리·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국회 선거관리감독위원회가 관여할 수 없게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 및 제37조의2 신설 등).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재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8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현행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를 분리하여, 이를 전담하는 겸임 상임위원회로서 ‘선거관리감독위원회’(이하 “감독위원회”)를 신설하고(안 제37조제1항제9호 및 제18호),

감독위원회의 전체회의 및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개최 횟수를 다른 겸임 상임위원회와 동일하게 위원장 및 소위원장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제3항 및 제57조제6항).

또한, 감독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요 사업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투표용지·투표함 등 선거관리 물품의 관리 체계, 선거관리 중대사고와 재발방지대책, 감사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사 결과, 투표·개표 절차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조직·인사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 등을 심사하도록 하되(안 제37조의2제1항 신설),

진행 중인 개별 선거의 투표·개표 사무, 개별 투표소·개표소의 운영, 당선인 결정 또는 선거 결과의 확정 및 특정 정당·후보자의 이해관계에 직접 관련된 개별 사건 등에 관하여는 관여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제2항 신설).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소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9. 행정안전위원회	9. -----
가.·나. (생략)	가.·나. (현행과 같음)
<u>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u>	<u><삭제></u>
<u>라. (생략)</u>	<u>다. (현행 라목과 같음)</u>
10. ~ 17. (생략)	10. ~ 17. (현행과 같음)
<u><신설></u>	<u>18. 선거관리감독위원회</u>
	<u>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u><신설></u>	제37조의2(선거관리감독위원회에 대한 특례)
	<u>① 선거관리감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u>
	<u>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요 사업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u>
	<u>2. 투표용지·투표함 등 선거관리 물품의 작성·보관·송부·회수 체계에 관한 사항</u>
	<u>3. 「공직선거법」 제151조의4제1항의 선거관리 중대사고 및 재발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u>
	<u>4. 감사원의 선거관리 사후감사 결과 보고서에 관한 사항</u>
	<u>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체감사 결과보고서에 관한 사항</u>
	<u>6. 사전투표, 투표관리, 개표관리 등 선거관리 절차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u>
	<u>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조직·인사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u>
	<u>② 선거관리감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여할 수 없다.</u>

제49조의2(위원회 의사일정의 작성기준) ① · ② (생략)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u>특별위원회</u> 및 <u>예산결산특별위원회</u>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개회 횟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7조(소위원회) ① ~ ⑤ (생략) ⑥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3회 이상 개회한다. 다만, 국회운영위원회, <u>정보위원회</u> 및 <u>성평등가족위원회</u>의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의 경우에는 소위원장이 개회 횟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⑦ ~ ⑨ (생략)	1. <u>진행 중인 개별 선거의 투표·개표 사무에 관한 사항</u> 2. <u>개별 투표소 또는 개표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u> 3. <u>개별 선거의 당선인 결정 또는 선거 결과 확정에 관한 사항</u> 4. 「공직선거법」 제219조에 따른 <u>선거소청</u>, 제222조에 따른 <u>선거소송</u> 및 제223조에 따른 <u>당선소송</u>이 계속 중인 사건의 심리·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 5.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이해관계에 직접 관련된 개별 사건에 관한 사항 제49조의2(위원회 의사일정의 작성기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u>선거관리감독위원회, 특별위원회</u>----- ----- -----. 제57조(소위원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 <u>정보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u> 및 <u>선거관리감독위원회</u>의 ----- ----- -----. ⑦ ~ ⑨ (현행과 같음)
◦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경과조치 ① 의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선거관리감독위원회 위원 선임 ② 이 법 시행 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거나 계류 중인 법률안 등 의안은 개정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거나 계류 중인 것으로 간주	

2. 개정안의 입법취지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핵심적인 민주적 절차로서,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대의민주주의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라고 할 수 있음.

이에 헌법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설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임기 및 정치적 중립성 등을 보장하고 있음.¹⁾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하여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 관리 과정에서 이른바 ‘소쿠리 투표’ 사태가 발생한 데 이어, 2023년에는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채용 의혹이 제기되었고, 2025년에는 사전투표지 외부반출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하는 등 선거관리 업무와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지속되어 왔음.

1) 「대한민국헌법」 제114조 ①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④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⑦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나아가,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는 26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일부 유권자가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를 하지 못한 채 투표소를 떠나는 등 선거권 행사에 상당한 불편과 지장이 발생하였으며, 선거관리 절차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사회적 혼란도 초래되었음.

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는 개별 선거관리 사고가 단순히 업무상 착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투표용지 등 선거관리 물품의 수급·관리, 위기 대응 및 보고체계, 조직·인사와 내부감사 등 선거관리 체계 전반의 문제와 관련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음.

특히, 선거관리 부실로 참정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사후적인 시정만으로 침해된 권리를 온전히 회복하기 어려우므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이후 국정조사 등 임시적·사후적인 수단에 의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회 차원에서 선거관리 사무의 구조적 문제를 상시적·전문적으로 점검하여 재발방지대책과 제도개선으로 연계할 수 있는 심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감독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신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 사무에 대한 국회의 상시적·전문적인 심사·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이해됨.

3. 검토의견

가. 선거관리감독위원회 설치 (안 제37조제1항 등)

개정안은 현행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중 하나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이를 전담하는 겸임 상임위원회로서 ‘감독위원회’를 신설하려는 것임.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항 등 광범위한 사무를 소관하는 행정안전위원회의 한계를 보완하고, 선거관리 분야에 대한 상시적·전문적인 심사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인사 및 정보시스템 등에 관한 업무는 상시적으로 발생하더라도, 선거관리 사무 전반의 업무량은 선거의 실시 여부와 그 시기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전담할 상임위원회를 신설할 정도의 지속적인 심사 수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또한, ‘감독위원회’를 신설할 경우 다른 겸임 상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전문위원 등 지원인력과 회의공간, 부대시설 및 장비 등 고정적인 조직·재정상 부담이 발생하므로, 별도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국회 조직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정한지 여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위원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를 전담하는 상설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보임.²⁾

이는 위원회 심사의 전문성과 충실성을 높이기 위하여 1991년 제13대 국회 국회법 개정 시 도입된 것으로, 소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안전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검토를 통하여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³⁾

행정안전위원회에 선거관리 사무를 전담하는 ‘상설소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기존 위원회의 지원인력과 시설을 활용하면서도 관련 안전을 지속적으로 심사할 수 있으므로, ‘감독위원회’ 신설에 따른 조직·재정상 부담을 줄이면서도 개정안의 입법목적을 일정 부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됨.⁴⁾

한편, 개정안에 따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감독위원회’로 이관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의 문언만으로는 각급선거관리 위원회가 국정감사 등 국회의 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개정안 심사 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⁵⁾

2) ‘상설소위원회’는 개별 법률안이나 예산안 등 특정 안전을 심사하는 ‘법안심사소위원회’ 또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구별되는 것으로, 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분담하여 심사하는 소위원회를 의미함.

「국회법」 제5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소관 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특정한 안전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에 대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인원 및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3) 국회사무처, 「국회법해설」, 2024, p.268

4) 참고로, 현재 활용이 되고 있지는 않으나 지난 1998년 제정된 「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이 당시 행정자치위원회에 ‘선거관리소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한 바 있다는 점도 이러한 대안의 제도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임.

「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 제2조(상설소위원회의 설치) 국회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각 상임위원회(정보위원회는 제외한다)는 다음과 같이 상설소위원회를 둔다.

7. 행정자치위원회

가. 선거관리소위원회

나. 행정·지방자치소위원회

다. 치안행정소위원회

5) 참고로, 우리 위원회에는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려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안, 제9462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 사무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려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안, 제19466호) 등 2건의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음.

나. 선거관리감독위원회에 대한 특례 (안 제37조의2 신설)

개정안은 ‘감독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요 사업과 정보시스템, 선거관리 물품의 관리체계, 중대사고 및 재발방지대책, 감사 결과와 조직·인사 제도 등을 심사하도록 하되, 진행 중인 개별 선거의 투표·개표 사무, 당선인 결정, 선거 결과의 확정 및 특정 정당·후보자와 직접 관련된 개별 사건 등에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감독 범위를 사후적·제도적인 사항으로 한정하려는 것임.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존중하면서도 선거관리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 결과를 재발방지과 제도개선으로 연계하려는 것으로, 선거관리의 책임성과 국민적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안 제37조제1항제18호는 신설되는 ‘감독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현행과 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 안 제37조의2제1항은 ‘감독위원회’의 심사대상을 7개 사항으로 열거하고 있음.

현행법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데,⁶⁾ 특정 상임위원회의 실제적인 심사 대상을 별도 조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입법례는

6) 「국회법」 제36조(상임위원회의 직무)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찾아보기 어렵고, 해당 열거가 한정적인 것인지 예시적인 것인지도 명확하지 아니하여 ‘감독위원회’의 심사 범위에 관한 해석상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임.

둘째, 안 제37조의2제1항제3호는 ‘「공직선거법」 제151조의4제1항의 선거관리 중대사고 및 재발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을 ‘감독위원회’의 심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인용 조항은 개정안과 함께 발의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안, 제19866호)에 따라 신설되는 것으로서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해당 법률안의 심사 경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⁷⁾

-
-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51조의4(선거관리 중대사고)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선거인의 선거권 행사 또는 선거관리의 공정성·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고(이하 “선거관리 중대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투표용지 부족 또는 부족 우려로 인한 투표 지연·중단
 2. 투표용지 또는 투표함의 분실, 오배송 등 관리 이상
 3. 투표소 또는 개표소의 운영 중단
 4. 개표 지연 또는 중단
 5. 선거 관련 전산시스템의 장애
 6. 투표록·개표록·선거록 등 선거 관계 서류의 분실·훼손
 7.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공무원·투표관리관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법령 위반
 8.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유
- ② 투표관리관은 선거관리 중대사고가 발생하여 투표가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투표 대기 선거인에 대한 안내 및 투표소의 질서유지
 2. 투표 지연·중단 시간 및 사유의 투표록 기재
 3.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투표 지연·중단 사실 보고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투표시간 연장 요청
 5. 그 밖에 선거인의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조치
-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 중대사고의 발생 사실, 사고 개요, 조치현황 및 향후 대응계획을 사고 발생을 인지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선거관리 중대사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감사원에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선거관리 중대사고 발생 현황 및 원인
 2. 선거관리 중대사고 대응 경과
 3. 선거관리 중대사고가 선거인의 선거권 행사에 미친 영향
 4. 관련 법령 및 내부 지침 준수 여부
 5. 선거관리 중대사고의 관련자에 대한 감사·징계 요구 등 책임조치 현황
 6. 재발방지 대책 및 법령·제도 개선 필요 사항
-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개 시 선거인의 개인정보, 투표의 비밀, 선거보안 또는 수사·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제6호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의 이행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셋째, 안 제37조의2제1항제4호는 ‘감사원의 선거관리 사후감사 결과 보고서’를 ‘감독위원회’의 심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 직무감찰이 헌법 및 법률상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관한 권한을 침해한다고 결정한 바 있음.⁸⁾

개정안과 함께 발의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안, 제19864호)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와 소속 공무원의 직무’를 추가하려는 것이나,⁹⁾ 이러한 입법조치로 인해 헌법 재판소 결정에서 제기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 침해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8) “정부와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는 물론 이들 헌법기관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설치된 선거관리위원회도 헌법 제97조가 정한 피청구인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 위에서 살핀 헌법 제97조를 구체화한 감사원법 제24조 제1항 제1호의 ‘행정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에도 청구인과 그 소속 공무원은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상 명백하다. … 이들 헌법기관 소속 공무원을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한 감사원법 제24조 제3항은 예시적·확인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직무감찰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직무감찰은 헌법 및 법률상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헌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관한 권한을 침해한다.” (헌법재판소 2025. 2. 27. 선고 2023헌라5 전원재판부 결정)

9)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해당 부분 발췌)

현 행	개 정 안
제24조(감찰 사항)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찰한다. <후단 신설> 1. ~ 4. (생략) <신설> ② ~ ④ (생략)	제24조(감찰 사항) ① ----- 이 경우 제5호의 사항을 감찰할 때에는 진행 중인 투·개표 사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와 그와 관련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 ② ~ ④ (현행과 같음)

한편, 감사원은 현행법상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이므로, ‘감독위원회’가 감사원의 감사 결과보고서 자체를 심사할 경우 상임위원회 간 소관이 중복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¹⁰⁾

넷째, 안 제37조의2제2항은 ‘감독위원회’의 관여 금지사항을 규정하면서, 제2호(개별 투표소 또는 개표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제5호(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이해관계에 직접 관련된 개별 사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1호(진행 중인 개별 선거의 투표·개표 사무에 관한 사항)와 달리 관여 금지의 시간적 범위를 ‘진행 중인 선거’로 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르면, 선거가 종료된 이후에도 개별 투표소에서 발생한 사고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등이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는 ‘감독위원회’가 ‘선거관리 중대사고 및 재발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도록 규정한 안 제37조의2제1항과 정합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선거 종료 후의 사후검증과 제도개선 목적의 심사는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아울러, 개정안은 ‘감독위원회’의 관여 금지사항을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와 선거쟁송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투표법」에도 투표·개표 관리, 결과의 확정·공표 및 쟁송에 관한 규정 등이 있음.¹¹⁾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진행 중인 국민투표의 투표·개표 사무, 결과의 확정 및 관련 쟁송에 대한 관여도 금지할 필요가 있음.

10)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치 및 이행에 관한 사항’ 등으로 수정할 수 있다고 보임.

11) 「국민투표법」 제7장(투표), 제8장(개표), 제50조(국민투표결과의 확정과 공표), 제75조(국민투표 무효의 소송) 등

다. 관계기관의 의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을 선거관리감독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은 상임위원회의 구성 및 소관사항 배분에 대한 것으로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016

